

결 정

2018 - 4027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전자신문 발행인 이 선 기

주 문

전자신문(etnews.com) 2018년 1월 12일자(캡처시각) 「[단독]10만원대 이어폰 1+1, 75%↓」 제목 등 6건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

<18. 1. 12. 00:29 캡처>

<http://www.etnews.com/20180111000304?mc=ns_001_00001>

전자신문은 광고블록 문패를 마치 기사목차인 것처럼 「눈번쩍! News」라고 달고 광고제목을 올렸다. 뉴스란 기사의 영역으로 광고에서 다뤄질 수 없다. 또한 광고 제목에 기사에나 사용하는 「단독」 표시를 해 마치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.

이는 “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”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3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